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1999. 8. 20
- 나. 제안자 : 부천시장
- 다. 회부일자 : 1999. 8. 20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7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99. 8. 2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지원국장 이종욱)

#### 가. 제안이유

- 2단계 구조조정으로 신설·폐지·통폐합 등 변경된 기구(안)와 행정자치부의 기구·정원 관련 조례·규칙 모델표준(안)에 의거
- 현 단위 기구별로 분산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구관련 조례를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조례로 통합 조정하고,
- 21세기 문화사업 육성을 위해 “지식산업과”를 신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와 “녹지공원관리사업소”를 합쳐 환경친화적인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만들었고, “체육청소년과”를 신설, 시민의 건강증진과 도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사회복지분야 중 장애인보호를 위한 장애인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구청에 환경분야업무를 보강하는 행정기구를 만들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 행정기구 조정

##### ○ 본 청

##### <국단위>

- 명칭변경 : 지역경제국 → 경제통상국, 세무국 → 기획세무국

##### <과단위>

- 신 설 : 체육청소년과, 지식산업과
- 폐 지 : 민방위재난관리과
- 통 폐 합 : 지역경제과 + 기업지원과 → 기업지원과
- 명칭변경 : 정보통신과 → 정보관리과,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

##### ○ 직속기관

##### <과단위>

- 신 설 : 농업기술센터

○ 사업소

<국단위>

- 명칭변경 : 상하수도사업소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과단위>

- 명칭변경 : 녹지공원관리사업소 → 녹지공원과
- 폐지 : 하수정화사업소(민간위탁부터)

농산지원사업소

○ 행정기구 관련 통합 조례

<현 행>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
-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설치조례
-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
- 부천시녹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
-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
-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
-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
-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
-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설치조례
-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신 설>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부천 시도 2단계 구조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시의 직속기관으로 속해 있는 바, 이는 당초 집행부의 안과 다르며 농산지원사업소가 승격된 것입니까?	○ 승격된 것은 아니며, 당초 행정자치부에 승인신청시에는 “농업지원사업소”로 했으나,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은 행정자치부의 권고 사항입니다.
○ 본 조례안에는 농산지원사업소가 시장 직속기관으로 소속되어 있음. 이럴 경우 5급 소장이	○ 업무처리는 전결규정에 의거 소장(5급)이 결정할 것은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p>4급(국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시장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소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행정수행상 여러 가지 착오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p> <p>○ “맑은물푸른숲사업소”는 당초 일반 사업소와 혼동되기 때문에 직급 구분을 위해서 명칭을 “사업본부”라고 하도록 했는데 “사업소”라고 조정된 이유는 무엇입니까?</p>	<p>각합니다.</p> <p>○ 행정자치부의 해석은 “본부”의 명칭은 도단위 이상 기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며, 시·군단위는 “사업소”로 하라고 지시하여 조정된 것입니다.</p>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수정안의 요지

○ 별첨 참조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98호
의결년월일	99. 8. 27 (제72회)

제출년월일 : 1999. 8. 25

제 출 자 : 행정복지위원장

□ 수정이유

○ 현행 “농산지원사업소”가 본 조례안에는 시장 소속하에 두는 직속기관에 포함되고 명칭도 “농업기술센터”로 조정되었는 바,

- 이는 현 농촌지원사업소장 직급이 5급으로 시장 직속기관으로 될 경우 4급 국장의 경유과정 없이 바로 부시장 결제를 받아야 하므로 행정수행상 여러 가지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현행대로 사업소로 두고 명칭도 “농촌지원사업소”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현행대로 “농산지원사업소”를 사업소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명칭도 현행대로 “농산지원사업소”로 함.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1호, 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직속기관 :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2. 사 업 소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농산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안 제3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3장제1절 보건소”를 삭제한다.

안 “제3장제2절 농업기술센터”와 “제15조(설치), 제16조(소장), 제17조(소관사무)”를 삭제한다.

안 “제18조(설치)”부터 “제25조(동장)”까지를 “제15조(설치)”부터 “제22조(동장)”로 한다.

안 제20조(소관사무) “1호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다음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2호”부터 “7호”까지를 “3호”부터 “8호”로 한다.

2. 농산지원사업소

- 가. 농업 및 축정업무에 관한 사항
- 나. 농촌지도 자연학습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 시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의 기관명 중 “부천시농업기술센터”를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로 하고, 위치를 “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 다음에 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1. 직속기관 :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u>농업기술센터</u>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1. 직속기관 :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삭제>

제 정 안	수 정 안
2. 사업소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청소사업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2. 사업소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u>농산지원사업소</u> , 청소사업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제3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제3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생략)	①(제정안과 같음)
②..... <u>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u> , .....	②..... <u>(삭제)</u> .....
<u>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u>	<삭제>
<u>제3장 제2절 농업기술센터</u>	<삭제>
제15조(설치) (생략)	<삭제>
제16조(소장) (생략)	<삭제>
제17조(소관사무) (생략)	<삭제>
제18조(설치) (생략)	제15조(설치) (제정안과 같음)
제19조(소장) (생략)	제16조(소장) (제정안과 같음)
제20조(소관사무) .....	제17조(소관사무) .....
1.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가.~마. (생략)	1. 맑은물푸른숲사업소 가.~마. (제정안과 같음)
<신설>	2. <u>농산지원사업소</u> 가. <u>농업 및 축정업무에 관한 사항</u> 나. <u>농촌지도, 자연학습에 관한 사항</u>
2. 청소사업소 가.~마. (생략)	3. 청소사업소 가.~마. (제정안과 같음)
3. 시립도서관 가.~마. (생략)	4. 시립도서관 가.~마. (제정안과 같음)
4. 도시개발사업소 가.~나. (생략)	5. 도시개발사업소 가.~나. (제정안과 같음)
5. 시설사업소 가.~나. (생략)	6. 시설사업소 가.~나. (제정안과 같음)
6. 차량등록사업소 가.~마. (생략)	7. 차량등록사업소 가.~마. (제정안과 같음)
7. 하수정화사업소	8. 하수정화사업소

제 정 안	수 정 안																									
<p>가.~바. (생략)</p> <p>제21조(설치) (생략)</p> <p>제22조(구청장) (생략)</p> <p>제23조(설치) (생략)</p> <p>제24조(직무) (생략)</p> <p>제25조(동장) (생략)</p> <p>[별표 1]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기 관 명</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소 재 지</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오정구보건소</td><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생 략)</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농업기술센터</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청소사업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d></td></tr> </tbody> </table>	기 관 명	소 재 지	.....		.....		부천시오정구보건소	(생 략)	부천시농업기술센터	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	부천시청소사업소	.....	.....		<p>가.~바. (제정안과 같음)</p> <p>제18조(설치) (제정안과 같음)</p> <p>제19조(구청장) (제정안과 같음)</p> <p>제20조(설치) (제정안과 같음)</p> <p>제21조(직무) (제정안과 같음)</p> <p>제22조(동장) (제정안과 같음)</p> <p>[별표 1] 시본청, 소속기관, 하부행정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기 관 명</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소 재 지</th> </tr> </thead> <tbody> <tr><td style="text-align: center;">(제정안과 같음)</td><td rowspan="6"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제정안과 같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오정구보건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부천시청소사업소</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제정안과 같음)</td><td></td></tr> </tbody> </table>	기 관 명	소 재 지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	부천시오정구보건소	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	부천시청소사업소	(제정안과 같음)	
기 관 명	소 재 지																									
.....																										
.....																										
부천시오정구보건소	(생 략)																									
부천시농업기술센터																										
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																										
부천시청소사업소																										
.....																										
.....																										
기 관 명	소 재 지																									
(제정안과 같음)	(제정안과 같음)																									
.....																										
부천시오정구보건소																										
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																										
부천시청소사업소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 포함]

###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02조 내지 제10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속기관 : 원미구보건소, 소사구보건소, 오정구보건소
2. 사업소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농산지원사업소, 청소사업소, 시립도서관, 도시개발사업소, 시설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하수정화사업소
3. 하부행정기관 :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제3조(국장 및 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시 본청 국장의 직급과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과·소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소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과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제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제지는 별표 1과 같다.

## 제2장 시본청

제5조(국의 설치) ①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기획세무국, 경제통상국,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을 둔다.

제6조(보좌기관) 부시장 밑에 공보실, 감사실, 읍부즈만을 둔다.

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 회계과, 체육청소년과, 정보관리과를 둔다.

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복무·인사·시정시책·선거·조직관리·교육·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청사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진흥·체육시설·청소년육성·사회진흥에 관한 사항
4. 정보기획·지역정보·정보운영·통신에 관한 사항

제8조(기획세무국에 두는 과) ①기획세무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부과1과, 부과2과, 징수과를 둔다.

②기획세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예산의 편성 및 집행·법무·의회·경영사업·심사분석·목표관리·통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평가심사·세무조사·세외수입에 관한 사항
3. 취득세·등록세·면허세 등 도세와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사항
4. 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시세 부과에 관한 사항
5. 지방세 체납관리·공매·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사항

제9조(경제통상국에 두는 과) ①경제통상국에 기업지원과, 지식산업과, 국제통상과, 실업대책총괄과를 둔다.

②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소기업 지원·산절관리·경제·입지지원 및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지식산업·문화산업·유통에 관한 사항
3. 무역진흥, 국제교류·협력·통상·외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실업대책·공공근로·노정에 관한 사항

제10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복지환경국에 시민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환경위생과를 둔다.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서민생활보호대책·장애인·민원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2. 여성정책·여성복지 및 노인복지 증진·보육에 관한 사항
3.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4. 환경·위생의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도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건축과를 둔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로시설·유지·관리 및 도로안전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일반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소장) ①각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②소장은 시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4장 사업소

제15조(설치)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제16조(소장) 각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맑은물푸른숲사업소
  - 가. 상하수도시설에 대한 확충 종합계획 수립·시행
  - 나. 상수원관리 및 원수개발



- 다. 상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관리 및 수질검사
- 라. 도시녹화 및 산림에 관한 사항
- 마. 공원조성 및 공원 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농산지원사업소

- 가. 농업 및 축정 업무에 관한 사항
- 나. 농촌지도·자연학습에 관한 사항

3. 청소사업소

- 가. 청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 나. 쓰레기매립장 및 적환장 유지관리
- 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업무
- 라.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수립·시행
- 마. 폐기물 재활용센터 운영 및 분리수거

4. 시립도서관

- 가. 도서의 수서 및 정리
- 나. 도서의 열람·대출 및 장서관리
- 다. 자료실 운영 및 학구적 조사연구 협조
- 라. 시설의 보호유지 및 관리
- 마.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사업소

- 가. 택지개발 및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6. 시설사업소

- 가. 공용건축물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 나. 공공건축물 신축용자의 취득 및 손실보상 업무에 관한 사항

7. 차량등록사업소

-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검사
- 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당설정·말소
- 다. 이륜차등록 및 지도단속
- 라.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행정처분
- 마. 기타 차량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8. 하수정화사업소

- 가.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

- 나. 분뇨 및 하수처리 공정의 각종 실험
- 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 라.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
- 마. 시설물 내의 전기·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 바. 기타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제5장 하부행정기관

제1절 자치구가 아닌 구

제18조(설치) ①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동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9조(구청장) ①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

②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감독한다.

제2절 동

제20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직무) ①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업무, 통·반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동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부천시보건소설치조례,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설치조례,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설치조례, 부천시녹지공원관리사업소설치조례, 부천시청소사업소설치조례,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설치조례, 부천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조례,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 부천시시설사업소설치조례,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 부천시시·구사무소소재지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천시학교급식시설및설치지원조례 제3조제3항 중 "담당부서의 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부천시공인조례 제7조 중 "총무과장"을 "공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적용시한) 시 본청 경제통상국 실업대책총괄과의 기구설치 기한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하수정화사업소는 민간위탁 전까지로 한다.

[별표 1]

시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기 관 명	소 재 지
부천시청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원미구보건소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81번지
부천시소사구보건소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
부천시오정구보건소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217의 5번지
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농산지원사업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청소사업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시립도서관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산3의14, 15번지
부천시시립도서관심곡분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산7의18번지
부천시시립도서관북부분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32번지
부천시도시개발사업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시설사업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차량등록사업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천시하수정화사업소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기 관 명	소 재 지	
원	원 미 구 청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71번지
	심 곡 1 동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27의6번지
	심 곡 2 동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3의3번지
	심 곡 3 동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39의19번지
	원 미 1 동	부천시 원미구 원미1동 99의2번지
	원 미 2 동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126의4번지
	소 사 동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3의1번지
	역 곡 1 동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225의29번지
미	역 곡 2 동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 36의9번지
	춘 의 동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71의56번지
	도 당 동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35의11번지
	약 대 동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14의6번지
구	중 동	부천시 원미구 중동 801번지
	중 1 동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4번지
	중 2 동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92의2번지
	중 3 동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78의4번지
	중 4 동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9의8번지
	상 동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8의1번지
	상 1 동	부천시 원미구 상동 396의2번지

기 관 명		소 재 지
소 사 구	소 사 구 청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64번지
	심 곡 본 1 동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534번지
	심 곡 본 동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685의15번지
	소 사 본 1 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8의30번지
	소 사 본 2 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33의8번지
	소 사 본 3 동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77의32번지
	범 박 동	부천시 소사구 범박동 33의6번지
	괴 안 동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72번지
	역 곡 3 동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08의1번지
	송 내 1 동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97의1번지
	송 내 2 동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의8번지
	오 정 구	오 정 구 청
성 곡 동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10의36번지
원 종 1 동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79-1번지
원 종 2 동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39의7번지
고 강 본 동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24-4번지
고 강 1 동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90의2번지
오 정 동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57의18번지
신 흥 동		부천시 오정구 내동 10의2번지

[별표 2]

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2조제2항관련)

명 칭	관할구역	비 고
부천시 원미구보건소	원미구 일원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소사구 일원	
부천시 오정구보건소	오정구 일원	

[별표 3]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18조제2항 관련)

구 명	관 할 구 역	비 고
원 미 구	심곡1동, 심곡2동, 심곡3동, 원미1동, 원미2동, 소사동, 역곡1동, 역곡2동, 춘의동, 도당동, 약대동, 중동, 중1동, 중2동, 중3동, 중4동, 상동, 상1동	
소 사 구	심곡본1동, 심곡본동, 소사본1동, 소사본2동, 소사본3동, 범박동, 괴안동, 역곡3동, 송내1동, 송내2동	
오 정 구	성곡동, 원종1동, 원종2동, 고강본동, 고강1동, 오정동, 신흥동	